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 1. 26. 김형동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6. 1. 2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 3. 24.)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 4. 7.)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형동의원)

현행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27년 12월 31일로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고,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신항진 수석전문위원)

개정안은 이 법 상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하거나 타인

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을 운영 효율성을 위해 매각, 임대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도록 한 유사입법례와 시설 운영의 전문성 강화 기반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부진했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다만,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법 제19조에는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법 제19조에 따른 처분 제한 대상에 해당하거나, 댐의 본래적 기능 수행을 위한 토지나 시설 등은 개정안에 따른 매각, 임대 또는 위탁 경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질의	답변
(김형동 위원) 과거 댐 조성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있었으며, 현 시점에서 댐 주변 개발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면서 환경을 보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댐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하천 상류 수변지역 보호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이용 편익이 상충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김형동 소위원장)

현행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국·공유지 또는 댐의 본래 목적(용수공급, 홍수조절 등) 달성을 위하여 국가 등이 소유·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물은 매각 등 대상에서 제외하고, 매각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함.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2.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4. .

제 안 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수정이유

현행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국·공유지 또는 댐의 본래 목적(용수공급, 홍수조절 등) 달성을 위하여 국가 등이 소유·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물은 매각 등 대상에서 제외하고, 매각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가. 현행법 제19조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거나 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및 시설물은 매각 등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단서를 추가함(안 제23조제1항).

나. 매각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단, 제19조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거나 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및 시설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 임대 또는 위탁의 대상과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3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관리) <u><신설></u>	제23조(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 등) ① 사업시행자 는 <u>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 또는 타 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 다. <단서 신설></u> <u><신설></u>	제23조(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 등) ① ----- ----- ----- ----- ----- ----- ----- ----- ----- ----- - 단, 제19조에 따 라 처분이 제한되 거나 댐 관리를 위 하여 필요한 토지 및 시설물은 제외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 임대 또는 위탁의 대상과 절 차, 기준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기준, 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시설물을 매수, 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는 그 토지나 시설물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 (현행 제1항과 같음) ④ 제3항-----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⑤ 제3항----- ----- ----- ----- -----.	③ (개정안 제2항과 같음) ④ (개정안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 ----- ----- ----- ----- ----- -. 1. ~ 3. (개정안과 같음) ⑥ 제4항----- ----- ----- ----- -----.
---	---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유지관리재원의 조성·관리)”를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 ①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거나 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및 시설물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매각, 임대 또는 위탁경영의 대상과 절차,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시설물을 매수, 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는 그 토지나 시설물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법률 제15674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부

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관리) <신설>	제23조(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 등) ①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거나 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및 시설물은 제외한다.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 임대 또는 위탁경영의 대상과 절차,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시설물을 매수, 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는 그 토지나 시설물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① (생략)	④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용	⑤ 제4항----- ----- -----

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기준, 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5674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 시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유효기간 만료 당시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제18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따른다.	-----. 1. ~ 3. (현행과 같음) ⑥ 제4항----- ----- ----- -. 법률 제15674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부칙 <삭 제> <삭 제> <삭 제>
---	--